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523
----------	------

발의연월일 : 2017. 6. 22.

발의자 : 박선숙 · 이찬열 · 김관영
고용진 · 인재근 · 김영주
김현권 · 김수민 · 김삼화
김종희 · 오세정 · 권은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해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금융회사들은 발행 후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지 않고 ‘시효가 소멸된 예금’으로 분류하여 금융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출연대상 ‘예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대상 예금’으로 하여 장기 미청구 된 자기앞수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예금등”이란”을 ““예금등”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의 예금을 포함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예금등</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 나. (생 략)</p> <p>3. ~ 7.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예금등</u>”이란 「<u>예금자보호법</u>」 제2조제2호의 예금을 포함하여----- -----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3. ~ 7. (현행과 같음)</p>